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강서구 소속 장 상 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동 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,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등 구체적 기능에 대한 사항은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등이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축될 수 있습니다. 더욱이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및 폐지의 경우 상위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규칙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